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제622호 2021. 11. 5(금)

고 시

- 제226호 횡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정정 고시 2
- 제227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3
- 제228호 횡성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01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4
- 제23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8
- 제23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9
- 제233호 횡성 군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0
- 제23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6
- 제237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7
- 제239호 횡성군 하천 점·사용 고시 18
- 제240호 횡성군 하천 점·사용 고시 19
- 제241호 횡성군 하천 점·사용 고시 20

공 고

- 제1390호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1
- 청정환경사업소 제18호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0
- 제1400호 공인 폐기 공고 35
- 제1401호 공인 신조 공고 36
- 제1403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 37
- 제1406호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8
- 제1438호 공시송달 공고 40
- 제1443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 42
- 제1453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28

회									
람									

황성군 고시 제2021 - 22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시행계획 정정고시

황성군 고시 제2021-223호(2021.10.19.)로 결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대하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의 내용에 일부 착오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황 성 군



1. 결정(변경) 정정사유

○ 황성군 고시 제2021-223호(2021.10.19.)로 결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시행계획내용 중 면적 정정

- 구역면적, 수혜면적, 개간대상면적, 개전면적 : 4,950㎡ → 4,500㎡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황성군 허가민원과로 문의(☎033-340-22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군 고시 제2021-227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황성군 둔내면 석문리 63-5번지 외 1필지 일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황 성 군



-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고시
- 2. 고 시 날 짜 : 2021.10.25.(월)
- 3. 사 업 목 적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시행
- 4. 위 치 : 강원도 황성군 둔내면 석문리 63-5번지 외 1필지 일원
- 5. 사업시행자 : 강원도 황성군 둔내면 석문길 140-29 이○환(님)
- 6. 사업시행면적 : 3,480㎡
※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 7. 개간 대상지 선정 : 2017.11.28.
※ 최초 시행계획 승인(2018.02.14.)
- 8. 사업개요(예상 감보율 포함)
○ 개간대상 면적 : 3,480㎡ (개과 3,480㎡)
○ 재배작물 : 개과(사과)
- 9. 총 사 업 비 : 41,398,000원
- 10. 사 업 기 간 :
당초) 2018.02.14. ~ 2019.12.31. **변경) 2018.02.14. ~ 2022.10.15.**
- 1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변경) 도서 : 실음생략
-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황성군 허가민원과로 문의(☎033-340-22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군 고시 제2021-228호

황성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201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 황성군 우천면 우항리 409-5번지 일원에 황성군 고시 제2020-161호(2020. 7. 1.)로 최초 결정(변경)된 황성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0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황성군청 도시교통과 (033-340-26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황 성 군 수

가. 사업대상지 : 황성군 우천면 우항리 409-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황성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 명칭 : 황성 군계획시설 (도로: 소로1-201호선) 사업
[우천면 우항리(황성 참전기념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면적

노 선 명	총 결정 현황	기 시 공	금 회 시 공	향 후 계 획	비 고
소로1-201호선	연장 : 365m 폭원 : 10m	-	연장 : 365m 폭원 : 1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황성군수(도시교통과)
- 주 소 : 강원도 황성군 황성읍 태기로 1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21. 10. 27.
- 준공예정일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 참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 협의사항 : 붙임 조서 참조

[붙임]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읍·면	리				도시 계획내	도시 계획외	합 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사항	
합 계						3,722	2,308	6,030						
1	우천면	우항리	409-1	도	67	7	-	7	국토 교통부					
2	우천면	우항리	409-2	도	69	47	2	49	국토 교통부					
3	우천면	우항리	407-3	도	143	7	-	7	국토 교통부					
4	우천면	우항리	407-4	전	45	16	29	45	횡성군					
5	우천면	우항리	418-1	답	165	97	68	165	횡성군					
6	우천면	우항리	409-5	전	1,226	821	405	1,226	횡성군					
7	우천면	우항리	417-2	답	209	130	79	209	횡성군					
8	우천면	우항리	419-5	대	161	132	29	161	횡성군					
9	우천면	우항리	419-9	전	84	63	21	84	횡성군					
10	우천면	우항리	419-8	전	205	140	65	205	횡성군					
11	우천면	우항리	419-6	전	13	-	13	13	횡성군					
12	우천면	우항리	646	구	26,384	140	368	508	농수산부					
13	우천면	우항리	644-39	도	789	27	46	73	국토 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읍·면	리				도시 계획내	도시 계획외	합 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사항	
14	우천면	우항리	420-1	답	563	183	380	563	횡성군					
15	우천면	우항리	155-14	전	16	-	16	16	횡성군					
16	우천면	우항리	155-13	전	228	90	138	228	횡성군					
17	우천면	우항리	154-2	임	780	658	122	780	횡성군					
18	우천면	우항리	155-12	전	134	98	36	134	횡성군					
19	우천면	우항리	155-10	전	284	236	48	284	횡성군					
20	우천면	우항리	694	구	23,105	348	105	453	농림 수산부					
21	우천면	우항리	713	도	1,371	161	101	262	농림 수산부					
22	우천면	우항리	155-11	전	29	11	18	29	횡성군					
23	우천면	우항리	156-2	전	4	1	3	4	횡성군					
24	우천면	우항리	149-7	전	58	25	33	58	횡성군					
25	우천면	우항리	147-2	답	36	8	9	17	횡성군					
26	우천면	우항리	147-3	답	151	14	17	31	횡성군			147-7	147-3에서 분할	
27	우천면	우항리	146	답	77	20	20	40	횡성군			146-2	146에서 분할	
28	우천면	우항리	145	답	29	17	12	29	횡성군					
29	우천면	우항리	141-8	대	46	37	9	46	횡성군					
30	우천면	우항리	141-5	도	318	43	24	67	횡성군					
31	우천면	우항리	712-3	도	237	145	92	237	농림 수산부					

○ 지장물조서

소재지	지번 (당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우천면 우항리	694	철지주 및 그물망 등	철지주 및 그물망	17	m	한선엽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159-2				

횡성군 고시 제2021 - 23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709번지 일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횡 성 군



-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2. 고 시 날 짜 : 2021. 10. 27.(수)
- 3. 사 업 목 적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시행
- 4. 위 치 :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709번지 일원
- 5. 사업시행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상안2길 121 이0숙(님)
- 6. 사업시행면적 : 구역면적 1,605㎡, 수혜면적 1,605㎡
- 7. 개간 대상지 선정 : 2021.07.30.
- 8. 사업개요(예상 감보율 포함)
 - 개간대상 면적 : 1,605㎡ (개전 1,605)
 - 재배작물 : 들깨, 고추, 콩
- 9. 총 사 업 비 : 86,768,538원
- 10. 사 업 기 간 : 시행계획승인일 ~ 2023.12.31.(산지전용허가기준)
- 1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서 : 실음생략
-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허가민원과로 문의(☎033-340-22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고시 제2021 - 23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산665번지 일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횡 성 군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 고 시 날 짜 : 2021. 10. 28.(목)
3. 사 업 목 적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시행
4. 위 치 :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산665번지 일원
5. 사업시행자 :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67, 102동 501호 오0호(님)
6. 사업시행면적 : 구역면적 1,590㎡, 수혜면적 1,590㎡
7. 개간 대상지 선정 : 2021.09.10.
8. 사업개요(예상 감보율 포함)
 - 개간대상 면적 : 1,590㎡ (개전 1,590)
 - 재배작물 : 표고버섯
9. 총 사 업 비 : 134,000,000원
10. 사 업 기 간 : 시행계획승인일 ~ 2023.08.31.(산지전용허가기준)
1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서 : 실음생략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허가민원과로 문의(☎033-340-22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고시 제2021-233호

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146번지 일원에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횡 성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공공기관 유치 및 각종 공모사업 등에 대비한 개발가능지의 체계적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체계적 조성을 도모하고, 해당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 기존 횡성 제1문화복합단지(구. 우천문화복합단지)와 공공·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 및 문화·관광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위 치 :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146번지 일원

다. 면 적 : 274,776㎡

다.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라.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 비치)

[붙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30	황성 제2문화 복합단지	관광휴양형	황성읍 추동리 146번지 일원	-	증)274,776	274,776	금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30	황성 제2문화 복합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 신설 - 면적 : 274,77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성 문화복합단지와 연계한 공공·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418	10	집산 도로	860	추동리 219-3	추동리 186-1	일반도로		금회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 B=10m, L=86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내 주도로인 황성리도 209호선을 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2	주차 장	노외주차 장	횡성을 추동리 219번지 일원	-	증) 3,775	3,775	금회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32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신설 - 면적: 3,7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가 구		비 고
		위 치	면 적(㎡)	
계		-	274,776	100.0%
A	관광휴양시설용지	횡성을 추동리 160번지 일원	61,049	22.2%
B	문화시설용지	횡성을 추동리 145번지 일원	48,141	17.5%
C	교육연구시설용지	횡성을 추동리 208번지 일원	62,029	22.6%
D	공공시설용지	횡성을 추동리 219번지 일원	12,793	4.7%
E	녹지용지	횡성을 추동리 200번지 일원	90,764	33.0%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분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총 계		-	274,776	
관광휴양시설용지(A)			61,049	
A-1	근린생활시설	횡성을 추동리 218-2번지 일원	773	
A-2	근린생활시설	횡성을 추동리 218-1번지 일원	706	
A-3	근린생활시설	횡성을 추동리 218-1번지 일원	703	
A-4	근린생활시설	횡성을 추동리 219번지 일원	687	
A-5	근린생활시설	횡성을 추동리 219번지 일원	751	
A-6	관광시설	횡성을 추동리 160번지 일원	50,687	
A-7	관광시설	횡성을 추동리 183번지 일원	6,742	
문화시설용지(B)			48,141	

도면표시 번호	구 분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B-1	문화시설	횡성읍 추동리 221번지 일원		8,633
B-2	문화시설	횡성읍 추동리 145번지 일원		39,508
교육연구시설용지(C)				62,029
C-1	교육연구시설	횡성읍 추동리 208번지 일원		62,029
공공시설용지(D)				12,793
D-1	주차장	횡성읍 추동리 219번지 일원		3,775
D-2	도로	횡성읍 추동리 186-1번지 일원		9,018
녹지시설(E)				90,764
E-1	원형보전녹지	횡성읍 추동리 산33-2번지 일원		21,790
E-2	기타녹지	횡성읍 추동리 200번지 일원		19,671
E-3	기타녹지	횡성읍 추동리 129-2번지 일원		5,885
E-4	기타녹지	횡성읍 추동리 212-2번지 일원		1,641
E-5	기타녹지	횡성읍 추동리 204-1번지 일원		708
E-6	기타녹지	횡성읍 추동리 231번지 일원		1,657
E-7	기타녹지	횡성읍 추동리 149번지 일원		9,238
E-8	기타녹지	횡성읍 추동리 175-1번지 일원		1,862
E-9	원형보전녹지	횡성읍 추동리 170번지 일원		24,104
E-10	원형보전녹지	횡성읍 추동리 산23번지 일원		4,208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A-1	횡성읍 추동리 218-2번지 일원	용도	• 관광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16m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밤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밤색계열 권장	
A-2	횡성읍 추동리 218-1번지 일원	용도	• 관광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16m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밤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밤색계열 권장	
A-3	횡성읍 추동리 218-1번지 일원	용도	• 관광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를		
		높이	• 4층 이하(16m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밤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밤색계열 권장	
A-4	횡성읍 추동리 219번지 일원	용도	• 관광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16m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밤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밤색계열 권장	
A-5	횡성읍 추동리 219번지 일원	용도	• 관광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16m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밤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밤색계열 권장	
A-6	횡성읍 추동리 160번지 일원	용도	• 관광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40m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회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회색계열 권장	
A-7	횡성읍 추동리 183번지 일원	용도	• 관광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40m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회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회색계열 권장	

나.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B-1	횡성읍 추동리 221번지 일원	용도	• 문화.집회시설 및 부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40m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회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회색계열 권장	
B-2	횡성읍 추동리 145번지 일원	용도	• 문화.집회시설 및 부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회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회색계열 권장	

다. 교육연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C-1	횡성읍 추동리 208번지 일원	용도	• 교육연구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40m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경사형지붕 권장	
		색채	• 벽채 : 연한 회색계열 권장, 지붕 : 짙은 회색계열 권장	

횡성군 고시 제2021 - 23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산1-2번지 일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횡 성 군 수



-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2. 고 시 날 짜 : 2021. 11. 03.(수)
- 3. 사 업 목 적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시행
- 4. 위 치 :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산1-2번지 일원
- 5. 사업시행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경강로신촌1길 64 박0학(님)
- 6. 사업시행면적 : 구역면적 4,986㎡, 수혜면적 4,986㎡
- 7. 개간 대상지 선정 : 2021.08.09.
- 8. 사업개요(예상 감보율 포함)
 - 개간대상 면적 : 4,986㎡ (개과 4,986)
 - 재배작물 : 매실, 사과, 블루베리
- 9. 총 사 업 비 : 12,416,000원
- 10. 사 업 기 간 : 시행계획승인일 ~ 2024.10.31.(산지전용허가기준)
- 1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서 : 실음생략
-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허가민원과로 문의(☎033-340-22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군 고시 제2021-237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황성군 갑천면 하대리 산84-4번지 일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황 성 군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고시
2. 고 시 날 짜 : 2021.11.05.(금)
3. 사 업 목 적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시행
4. 위 치 : 강원도 황성군 갑천면 하대리 산84-4번지 일원
5. 사업시행자 : 강원도 황성군 갑천면 갑천로690번길 147-6 홍○표(님)
6. 사업시행면적 : 2,819㎡
 - ※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7. 개간 대상지 선정 : 2016.12.09.
 - ※ 최초 시행계획 승인(2017.07.27.)
8. 사업개요(예상 감보율 포함)
 - 개간대상 면적 : 2,819㎡ (개전 2,819㎡)
 - 재배작물 : 개전(배추, 무, 고추)
9. 총 사 업 비 : 63,000,000원
10. 사 업 기 간 :
 - 당초) 2017.07.27. ~ 2020.04.30. **변경) 2017.07.27. ~ 2022.04.30.**
1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변경) 도서 : 실음생략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황성군 허가민원과로 문의(☎033-340-22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고시 제 2021-239호

횡성군 하천 점·사용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 동법 제33조제6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횡 성 군



1. 허가번호 : 제 5-69 호
2. 위 치 :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175번지 외 3필지
3. 면 적 : 영구 34㎡
4. 점용목적 : 녹조우심지역 통합관측소 설치
5. 점용기간 : 2021. 11. 4. ~ 2025. 12. 31.
6. 피허가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O로 OO 환OO
7. 허가서류 : 건설과 비치

황성군 고시 제 2021-240호

황성군 하천 점·사용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동 법 제33조제6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황 성 군



- 1. 허가번호 : 제 7-90 호
- 2. 위 치 : 황성군 공근면 청곡리 325번지
- 3. 면 적 : 90㎡
- 4. 점용목적 : 공원조성
- 5. 점용기간 : 2021. 11. 5. ~ 영구
- 6. 피허가자 : 황000(산림0000)
- 7. 허가서류 : 건설과 비치

황성군 고시 제 2021-241호

황성군 하천 점·사용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동 법 제33조제6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황 성 군



- 1. 허가번호 : 제 6-105 호
- 2. 위 치 : 황성군 청일면 유동리 1265-44번지
- 3. 면 적 : 120㎡
- 4. 점용목적 : 제설제 야적장
- 5. 점용기간 : 2021. 11. 5. ~ 2022. 3. 30.
- 6. 피허가자 : 황000(건000)
- 7. 허가서류 : 건설과 비치

황성군 공고 제2021-1390호

「황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황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황 성 군 수

황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가. 황성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황성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 : 제1조 ~ 제3조 (목적, 정의 기본방향)
- 나.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 제4조 ~ 제6조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다. 제3장 에너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7조 ~ 제13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제4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노력 등

: 제14조 ~ 제18조 : 지역에너지계획,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
문 등 에너지시책

마.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 제19조 : 행·재정지원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9일까지 황성군수(미래전략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ieom@korea.kr

2) 주소 : (우 25220) 강원도 황성군 황성읍 태기로 15 황성군청 4층
미래전략과 에너지팀

3) 팩스 : 033) 340-2565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미래전략과(340-20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 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조례 제 호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공장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6.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수요자인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에너지절약과 환경 친화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보급 확대
3. 군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7. 군민의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8.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군민·사회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이 참여하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에너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수가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군민·사회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설치)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군수,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에너지 분야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 관계자
3.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본 위원회는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보조금지원 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에너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노력 등

제1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제3조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 2. 분산형 에너지의 보급
- 3.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
-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 5. 온실가스 저감 대책
-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 7. 에너지빈곤층 등 지원 대책
- 8.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 9.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
-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 2.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 3.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 4.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 6. 관용차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의무

②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

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군수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 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19조(행·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정보, 기술, 홍보 등)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사업자·사회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때
2.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을 수행할 때
3. 군민·공공기관·단체 등의 에너지절약 활동(캠페인, 교육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4.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
5.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황성군 청정환경사업소 공고 제2021- 18호

『황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황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 월 29 일

황 성 군 수

황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개정취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2일까지 황성군수(청정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owonri@korea.kr
- 2) 주소 : (우 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오로 89
 횡성군청 청정환경사업소 축산폐수처리담당
- 3) 팩스 : 033) 340-5949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340-59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 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조례 제 호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ℓ, kg)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허가 대상	계	14	14	15	15	17
	수집·운반	8	8	8	8	9
	처리비용	6	6	7	7	8
신고 대상	계	14	14	15	15	17
	수집·운반	8	8	8	8	9
	처리비용	6	6	7	7	8
신고 미만	계	12	12	13	13	14
	수집·운반	8	8	8	8	9
	처리비용	4	4	5	5	5

※ 중량으로 측정하는 경우 비중(比重)을 고려하지 않음

[별표 2] [개정전]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ℓ)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허가 대상	계	7	9	10	12	14
	수집·운반	5	6	6	7	8
	처리비용	2	3	4	5	6
신고 대상	계	7	9	10	12	14
	수집·운반	5	6	6	7	8
	처리비용	2	3	4	5	6
신고 미만	계	6	7	8	10	12
	수집·운반	5	6	6	7	8
	처리비용	1	1	2	3	4

※

중량으로 측정하는 경우 비중(比重)을 고려하지 않음

황성군 공고 제2021-1400호

공인 폐기 공고

「황성군 공인 조례」 제6조 및 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황 성 군 수

1. 폐기 사유 : 자동인증기 교체
2. 폐기 일자 : 2021. 11. 01.
3. 폐기 공인 인영

연번	공인명	등록 사유	재료 및 규격	인영	비고
1	둔내면장인 민원실전용 (인증기전용)	자동인증기교체	흑운목 2.4cm 정방형 (제주고딕체)		
2	강림면장인 민원실전용 (인증기)	자동인증기교체	흑운목 2.4cm 정방형 (제주고딕체)		

황성군 공고 제2021-1401호

공인 신조 공고

「황성군 공인 조례」 제6조 및 9조의 규정에 따라 신조 공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황 성 군 수

1. 등록 사유 : 자동인증기 교체
2. 등록 일자 : 2021. 11. 01.
3. 신조 공인 인영

연번	공인명	등록 사유	재료 및 규격	인영	비고
1	둔내면장인 민원사무전용2 (인증기전용)	자동인증기교체	흑운목 2.1cm 정방형 (제주고딕체)		
2	강림면장인 민원실전용1 (인증기)	자동인증기교체	흑운목 2.1cm 정방형 (제주고딕체)		

횡성군 공고 제 2021-1403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횡 성 군



시행 (점용 · 사용자)	상호 및 명칭	강00		
	대 표 자		주 소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길 000
소하천명	봉막천			
공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705 외 1필지(동리 151번지)		
	면 적	217㎡	폐 천 부 지 예 상 면 적	
	기 간	2021. 10. 28. ~ 2025. 12. 31		
	목적 및 사유	진출입용 라멘교 설치		

열람서류 : 설계도서 1부(건설과 비치)

횡성군 공고 제2021-1406호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기간 만료 및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횡 성 군 수

1. **공고내용** :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3. **당사자** : 이0자 외 2명(붙임 “허가취소 처분대상 현황” 참조)
4. **예정된 처분의 원인** : 사업기간 경과에 따른 시정조치 불이행
5.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갑천면 상대리 산141번지 외 3필지의 개발행위허가의 취소하고자 함
6.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7. 청문실시

청문실시	기관명	횡성군청	부서명	허가민원과	담당자	장 순 열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전화번호	033-340-2287
	일시	2021년 11월 26일 14:00부터 16:00까지			장소	민주평통협의회 회의실 (허가민원과 3층)
	의견제출	2021년 11월 19일 18:00 까지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횡성군청 재난안전과 복구지원팀장			
성명		김 민 수				

8.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1. 11. 1. ~ 2020. 11. 19.

9. 게시장소 : 군보 및 홈페이지

10. 기타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실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실시 일시 이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할 예정입니다.
-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개발허가팀(033-340-22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및 청문실시대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횡성군 공고 제2021 -14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횡성군 34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10. 7.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1. 11. 2.

횡 성 군 수

1. 사 업 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위치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구간
3.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1. 10. 7.)
5. 공고 기간 : 2021. 11. 2. ~ 2021. 11. 18.(16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아래 참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횡성군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230-2534)

공 시 송 달 대 상 자

(토지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 사업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횡성군 34차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 재결일 : 2021. 10. 7.(21수용0702)

일련 번호	성 명	송 달 주 소	사 유
1	김창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 능실마을21단지 2105동 805호	폐문부재
2	박봉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154번길 44-19	수취인불명
3	이영재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1614	주소불명
4	한복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19번길 9	수취인불명
5	김성상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8	수취인불명
6	미등기1		송달불능
7	미등기2		송달불능
8	신희집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주소불명

횡성군 공고 제 2021-1443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횡 성 군



시행 (점용 · 사용자)	상호 및 명칭	현천00000		
	대 표 자		주 소	횡성군 둔내면 현천북길 00
소하천명	선락천			
공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666-13번지		
	면 적	42m ²	폐 천 부 지 예 상 면 적	
	기 간	2021. 11. 2. ~ 2025. 12. 31		
	목적 및 사유	토지(진출입로)		

열람서류 : 설계도서 1부(건설과 비치)

황성군 공고 제2021-1453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황성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중 소규모 고위험시설(강심터1교)정비사업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황 성 군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위치

- 가. 사업의 명칭 : 소규모 고위험시설(강심터1교) 정비사업
- 나. 시행위치 : 황성군 청일면 갑천리 477번지 일원

2. 사업의 규모, 사업비 및 효과

- 가. 규 모 : 교량 재가설 L=19m, B=5.0m
- 나. 사업비 : 금 500,890천원
- 다. 효 과 : 노후교량 재 가설로 재해위험 해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주 소 : 황성군 황성읍 태기로 15
- 나. 성 명 : 황성군수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2021년 10월
- 나. 준공예정일 : 2022년 04월 15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붙임 참조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설계도서, 예정공정표등 열람장소 : 횡성군 재난안전과

7.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서

가.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도금액(예정)	관급자재	기타
총 사업비		500,890	342,573	158,317	0
공사비	토목공사	466,880	308,563	158,317	-
	폐기물처리	34,010	34,010	-	-
부대비등		-	-	-	-

나. 자금조달 계획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도 비	군 비	비 고
사업비	500,890(100%)	250,445 (50%)	250,445 (50%)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자조서

연번	면	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등기부등본상소유자		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주 소	성명		
합 계											
1	청일	갑천	463	1	전	529	198	횡성군 청일면 봉덕로248-11	김영옥		
2	청일	갑천	463	2	답	228	228		국(재무부)		
3	청일	갑천	463	3	답	334	334		국(재무부)		
4	청일	갑천	463	5	전	450	27		국(재무부)		
5	청일	갑천	477		대	909	60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393	서하일		
6	청일	갑천	480	1	전	1,670	17	횡성군 청일면 봉덕로248번길 21	이영순		
7	청일	갑천	482		답	403	48	횡성군 청일면 봉덕로248번길 21	이영순		